

공급내역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킹 가입 및 공인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의해 투기과열지구(2003. 06. 07)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분양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자, 그리고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되었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원미구 도시균형개발과 - 507 (2008.03.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63-6외 6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 8~15층 아파트 11개동 총 371세대(입대 7개동 20세대 포함)중 47세대(주택재건축조합 공급세대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4세대,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2세대 포함)

(면적단위 : m²,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향별	동별	층수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 가격			계약금	잔금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							대지비	건축비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영주택	21867-01	2008000352 (01)	101.149	77.876	23.273	101.149	28.411	129.560	49.139	동향	110	11~12	22	1	1층	152,706	176,294	329,000	32,900	296,100
														1	2층	152,706	186,294	339,000	33,900	305,100
														20	기준층	152,706	196,294	349,000	34,900	314,100
	21867-02	2008000352 (02)	137.513A	114,945	22,568	137,513	41,936	179,449	66,805	동향	103/107	15	15	1	2층	207,945	272,055	480,000	48,000	432,000
														14	기준층	207,945	286,055	494,000	49,400	444,600
														2	1층	207,945	270,055	478,000	47,800	430,200
21867-03	2008000352 (03)	137.513B	114,945	22,568	137,513	41,936	179,449	66,805	남향	105	13~15	10	8	기준층	207,945	299,555	507,500	50,750	456,75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금액 범위내에서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향별, 층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주택형 표기면적은 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시하였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2항에 해당하는 분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4.01(10:00~16:00), 당사 분양사무실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4.01(16:00), 당사 분양사무실(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참고)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3.28)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 청약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자참하시기 바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장애인인정증명서)없이 장애인 인정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으로는 청약신청 자격이 없음.
- 장애인 인정증명서는 거주지 해당 시·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므로 거주지 해당 시·구청 및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 등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세대 : 101.149㎡ 2세대, 137.513A㎡ 1세대, 137.513B㎡ 1세대 총 4세대

2)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공급주택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능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본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불가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양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배점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세대수의 4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이래표 참조) 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는 세대수 비율이 적어 공급세대가 없음.
 - 우선순위배점표(배점기준표 참조)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주택형(㎡)	101,149	137,513A	계
경기도	1	1	2
서울특별시	0	0	0
인천광역시	0	0	0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4. 01(10:00~16:00), 당사 분양사무실
- 동·호수 추정일시 및 장소 : 2008. 04. 01(16:00), 당사 분양사무실(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참고)
-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28)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및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 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이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이별,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2005. 07. 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제3자 대리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양식 비치)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 표기)					
평 점 요 소	총 배 점	배 점 기 준		해당사항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연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28) 현재 경기도 부천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순위내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